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07
----------	-----

발의연월일 : 2022. 4. 13.

발의자 : 김진희, 김지훈, 원병일,
김영실, 박은경

1. 제안 이유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령기 이후에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학습 교육을 제공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및 평생교육센터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나.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을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다. 평생교육센터의 설치·운영과 업무 및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제9조)

라.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권한과 관련기관과의 협력

체계의 구축을 규정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3. 전부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5. 관계법령

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평생교육법」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장애인으로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

합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달장애인 지원의 추진목표와 정책방향

2.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지원에 관한 사항
3.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지원 등에 대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의 활동 지원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사업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지원

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7.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하여 남양주시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평생교육센터의 업무) 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평생교육센터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법인 또는 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재위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지도와 감독)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대하여 지도를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평생교육센터 설치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조성 및 운영을 위한 비용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상위 법령과 조례안에 예산 등의 구체적인 지침이 정해지지 않아서 2022년도 3월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현황을 참고하여 작성함
- 매년 물가상승 및 인건비 증가분 3% 반영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비용 추계
- 2024년부터 경기도 전역으로 평생교육지원센터 확대 예정으로 도비 지원(도 30%, 시 70%)
- 산출기초
 - 설치비 : 300,000천원
 - 건물 임차보증금 100,000천원, 시설비 120,000천원, 자산취득비 80,000천원)
 - 시설운영비
 - 인건비 : 398,900천원(상근직원 9명)
 - 운영비 : 176,000천원(임차료, 수용비, 각종 요금 등)
 - 사업비 : 60,000천원(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소요액		935	654	674	694	715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설치비	300				
	시설운영비	635	654	674	694	715

다. 재원조달방안: 지방세 수입으로 2023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남양주시 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 : 시비 100%
- 2024년부터 평생교육지원센터 확대 예정으로 도비 지원 : 도 30%, 시 70%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없음

4. 작성자: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	-	-	-	-	-
세 출		934,900	653,950	673,580	693,800	714,620	3,670,850
건물 임차보증금		100,000	-	-	-	-	100,000
시설비		120,000	-	-	-	-	120,000
자산취득비		80,000	-	-	-	-	80,000
인건비		398,900	410,870	423,200	435,900	448,980	2,117,850
운영비		176,000	181,280	186,720	192,330	198,100	934,430
사업비		60,000	61,800	63,660	65,570	67,540	318,570
재원조달		934,900	653,950	673,580	693,800	714,620	3,670,850
의존 재원	소계	-	196,185	202,074	208,140	214,386	820,785
	보조금	-	196,185	202,074	208,140	214,386	820,785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계	934,900	457,765	471,506	485,660	500,234	2,850,065
	지방세	934,900	457,765	471,506	485,660	500,234	2,850,065
	세외수입						
지방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등)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13호 일부개정 2021. 12.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제11조(자조단체의 결성 등)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단체(自助團體)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게 적절한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의 원인규명과 치료 및 행동문제 등의 완화를 위한 연구 및 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거점병원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영화, 전시관, 박물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을 관람·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 놀이기구,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행사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거주시설·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6.8] [[시행일 2021.12.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21.6.8] [[시행일 2021.12.9]]

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을 적절하게 보호 및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시행일 2020.6.4]]
- ③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시행일 2020.6.4]]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과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성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시행일 2020.6.4]]

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동거하는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휴식지원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형제·자매로서 발달장애인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평생교육법

법률 제18195호 일부개정 2021. 06. 0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2021.6.8] [[시행일 2021.12.9]]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

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평생교육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7.5.30]]